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633호(號) 1929년(昭和 4) 2월 13일 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36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28호(號)(조선국유철도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별표(別表) 화물특정임률표(貨物特定賃率表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9(昭和 4)년 2월 13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야마나시 한조(山梨半造)

국선(局線) 내(內) 특정임률(特定賃率)의 부문[部] 성냥개비[燐寸軸木], 성냥갑[燐寸箱] 용(用) 무늬목[經木]의 항(項) 기사란(記事欄) 중(中) 「1929(昭和 3)년」을 「1930(昭和 5)년」으로 개정(改正)함.